

2025년도 제5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록

I 개 요

- 일 시 : 2025. 6. 24.(화) 10:00~11:05
- 장 소 : 1호관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19명 중 참석 14명, 불참 5명
 - 참석위원(14명)
 - 최병조(부위원장), 이건상, 김준호, 임정훈, 김준석, 김동배, 송현호, 장규환, 박지훈, 강희찬, 이영수, 김규원, 황병희, 이남식
 - 불참위원(5명)
 - 이인재(위원장), 이준한, 정진영, 전경구, 이승호

II 회의결과

- 제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3조(준용규정) ①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원 학사, 교육과정 운영, 학위논문 및 학위(복수학위 포함) 수여 및 입학전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제7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자(석사과정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박사과정은 박사학위 소지의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논문은 3인, 박사논문은 5인을 위촉한다. 다만, 석사논문의 경우 3인 중 1인, 박사논문의 경우 5인 중 2인을 외부 인사로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제7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1.(수)
- 의견 조회 : 2025. 05. 21.(수) ~ 05. 30.(금)
- 사전 심사 : 2025. 06. 09.(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전요지 [제출자 : 동북아물류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하여, **동북아물류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학칙 제4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제7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자(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의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논문은 3인을, 박사논문은 5인을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다만, 석사논문의 경우 3인중 1인을, 박사논문의 경우 5인중 2인을 타과 또는 외부교수(연구원 포함)로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학위논문예 관한 규정」 제7조(심사위원 구성) 제8조(심사위원장)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의견 수렴 : 2025. 5월 중

○ 사전 심의 : 2025. 5월 중

○ 교육연구위원회 및 평의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정책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 하여, 정책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8조(논문심사위원 및 졸업시험위원 선정)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8조(논문 심사위원 및 졸업 시험위원 선정)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본부회의 및 본부회의 : 2025. 5월 중

○ 총장방침 : 2025. 5월 중

○ 의견 조회 및 사전 심사 : 2025. 5월 중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정보기술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하여, 정보기술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3조(논문심사위원선정)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 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3조(논문심사위원선정)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본부회의 및 본부회의 : 2025. 5월 중

○ 총장방침 : 2025. 5월 중

○ 의견 조회 및 사전 심사 : 2025. 5월 중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5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경영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 하여, 경영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논문심사위원선정)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하고,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을 위촉한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3.(금)

○ 의견 조회 및 사전심사 : 2025. 6월 중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평의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6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문화대학원장]

1. 제안사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610호(2025.2.10.)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선정 관련 학칙 조사 및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부 상위법에 의거** 하여, 문화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 반영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5조(논문심사위원선정) ① 생략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논문심사위원을 검토·확정한다.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5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5월 중

○ 의견 조회 및 사전심사 : 2025. 5월 중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평의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7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공학대학원장]

1. 제안사유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 공학대학원 학칙과 상이한 내용을 변경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 위촉 시,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반영
- 나. 휴학 시, 계속하여 휴학할 수 있는 학기 수를 2학기에서 4학기로 학칙과 일치하게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합의
-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1.(수)

○ 의견 조회 및 사전심사 : 2025. 5월 말

○ 교육연구위원회 및 평의원회 심의 : 2025. 6월 중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8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대학원장]

1. 제안사유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사과정 미설치학과 학위종을 추가하여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제4차 대학원위원회 주문사항)

2. 주요내용

[별표 1] 대학원 학위종별 내 유아·숲·자연교육학과(협동과정),
도시융·복합학과(협동과정) 석사 학위명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1.(수)

○ 의견 조회 : 2025. 05. 21.(수) ~ 05. 30.(금)

○ 사전 심사 : 2025. 06. 09.(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9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대학원장]

1. 제안사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하여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맞지 않아, **상위법에 의거하여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학점인정 범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수료학점 이상 인정 가능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편입학과와 개설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학점 제한없음)
 - 유사하지 않으면 타전공학점 인정(수료학점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의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2(편입학자의 인정학점)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과에서 심사하여 동일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 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제4조(편입학자의 학점 인정) ①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2에 의해 편입학한 자의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은 본교 대학원 교육과정에 맞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서식(별표 2)을 이용하여 학과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한다.

1. 편입학과와 개설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 편입학과와 개설과목과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그 학점은 동일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 ② 기 인정받은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6조(편입학자의 학점 이수) ① 편입학자는 동일학위과정 수료학점에서 제4조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② 전적 대학원 수료(예정)자가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적 대학원 학점이 동일학위과정의 수료 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주요내용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제4조의 편입학자학점인정 범위를 교육부 상위법에 맞게 변경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편입학자 학점인정조서(별표2)의 오타 및 작성요령 수정, 필요 항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교무회의 보고 : 2025. 05. 20.(화)
- 총장 방침 : 2025. 05. 21.(수)
- 의견 조회 : 2025. 05. 21.(수) ~ 05. 30.(금)
- 사전 심사 : 2025. 06. 09.(월)

○ 심의결과 : 보류

제10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육대학원장]

1. 제안사유

가. 우리 대학 내 부설기관인 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한 연수이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대학원 재교육 전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교육부 「2025년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통보」 (교원양성연수과 -2813호, 2025.04.18.)에 따라 학칙에 승인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교사재교육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4. 9

나. 교육부 「2025년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통보」(교원양성연수과-2813호, 2025.04.18.)

3.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점인정 규정 개정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16조(학점인정) ③항 신설

나. [별표1]에 “기계교육전공” 폐지,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을
“교육리더십전공” 으로 변경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 : 2025. 4. 28.(월)

○ 교무 회의 : 2025. 5. 20.(화)

○ 총장 방침 : 2025. 6. 4.(수)

○ 의견 조회 : 2025. 6. 4.(수) ~ 6. 10.(화)

○ 사전 심사 : 2025. 6. 18.(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 2025. 6. 24.(화)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11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육대학원장]

1. 제안사유

우리 대학 내 부설기관인 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한 연수이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대학원 재교육 전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교사재교육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4. 9

3. 주요내용

- 가.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수학점 인정 규정 개정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조(이수학점) ⑧항 신설

4.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 2025. 4. 28(월)
- 교무회의: 2025. 5. 20(화)
- 총장방침: 2025. 6. 4.(수)
- 의견수렴: 2025. 6. 4.(수) ~ 6. 10.(화)
- 사전심사: 2025. 6. 18.(수)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 6. 24.(화)

○ 심의결과 : 보류

제1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안건요지 [제출자 : 문화대학원장]

1. 제안사유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관련 공결 의무화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예비군법」, 「병역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문화대학원위원회 심의 : 2025. 4. 22.

○ 교무회의 보고 : 2025. 5. 20.

○ 총장 방침 : 2025. 5. 22.

○ 의견 수렴 : 2025. 5. 22. ~ 5. 30.

○ 사전 심사 : 2025. 6. 12.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제출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가.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는 수학 계열과 학문적 특성이 유사하나, 전임교원 재계약 및 승진 실적 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학교육과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재계약 및 승진 기준을 수학과와 일치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으로 JCR 학술지 순위 비율(%) 계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지침」에 부합하도록 JCR 비율(%) 적용 계산 방식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학교육과의 SCI급 논문의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논문 편수 및 산학협력 연구실적을 수학과와 동일하게 개정 (안 제6조 제8항, [별표 3] 3. 라.)

나.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따라 JCR 비율(%) 적용 계산 방식을 본 지침에 명시 (안 [별표 3]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 총장 방침: 2025. 4. 23.
- 의견 수렴: 2025. 4. 24. ~ 5. 2.
- 사전 심사: 2025. 5. 20.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2025. 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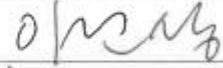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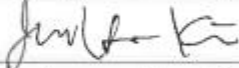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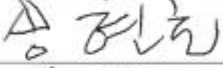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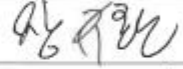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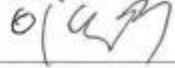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25년도 제5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심 의	5-1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5-2	인천대학교 동북이물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 정 가 결
	5-3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5-4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5-5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5-6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5-7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수 정 가 결
	5-8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 안 가 결
	5-9	인천대학교 대학원 편입학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 류
	5-10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수 정 가 결
	5-11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보 류
	5-12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원 안 가 결
	5-13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재계약임용·승진임용·장년보장임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 안 가 결

2025년 제5차 교육연구위원회 서명부

1. 일 시 : 2025. 6. 24.(화) 10:00
 2. 장 소 :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

연번	구분	직위	성명	서명
1	위원장	총장	이인재	
2	부위원장	교학부총장	최병조	
3	위원	대외협력부총장	이준한	
4	위원	인문대학장	이건상	
5	위원	자연과학대학장	김준호	
6	위원	사회과학대학장	임정훈	
7	위원	글로벌정경대학장 직무대리	정진영	
8	위원	공과대학장	김준석	
9	위원	정보기술대학장	전경구	
10	위원	경영대학장	김동배	
11	위원	예술체육대학장	송현호	
12	위원	사범대학장	장규환	
13	위원	도시과학대학장	박지훈	
14	위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직무대리	이승호	
15	위원	교무처장	강희찬	
16	위원	학생·취업처장	이영수	
17	위원	기획예산처장	김규원	
18	위원	연구처장	황병희	
19	위원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남식	